

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



구 미 시

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4. 3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 제1항 및 「구미시 시세 조례」 제14조에 의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을 추가 고시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

- 도시계획구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 중 「지방세법」 제1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정한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

나.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대상 : 12.438km²

- 선산읍 : 3개리 0.820km²(죽장, 화조, 독동리 일부지역)
- 해평면 : 7개리 6.593km²(낙성, 오상, 문량, 괴곡, 금산, 도문, 월호리 일부지역)
- 산동면 : 3개리 3.767km²(동곡, 도중, 적림리 일부지역)
- 장천면 : 2개리 1.258km²(하장, 신장리 일부지역)

다.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도면 : 붙임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, 제116조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11조
- 「구미시 시세 조례」 제14조, 제15조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32조

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

(단위 : km²)

구 분	지 역 명	면 적	비 고
총 계	1읍 3면 15개리	12.438	붙임 고시도면 참조
선 산 읍	죽장, 화조, 독동리 일부지역	0.820	도시지역 확장
해 평 면	낙성, 오상, 문량, 괴곡, 금산, 도문, 월호리 일부지역	6.593	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
산 동 면	동곡, 도중, 적림리 일부지역	3.767	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
장 천 면	하장, 신장리 일부지역	1.258	도시지역 확장

龜尾市都市計劃總括圖

범례	
기 고 시	
미 고 시 (금회 고시대상)	

고 시 구 분 : 미고시
지 역 명 : 선산읍 죽장, 화조,
독동리 일부지역
면 적 : 0.820 km²

고 시 구 분 : 미고시
지 역 명 : 해평면 낙성, 오상, 문량,
괴곡, 금산, 도문, 월호리
일부지역
면 적 : 6.593 km²

고 시 구 분 : 미고시
지 역 명 : 산동면 동곡, 도중,
적림리 일부지역
면 적 : 3.767 km²

고 시 구 분 : 미고시
지 역 명 : 장천면 하강, 신장리,
일부지역
면 적 : 1.258 km²

범례	
도·광역시·계	시·군청소재지
시·군·계	읍·면·동소재지
읍·면·동·계	명승고적
고속국도	성터
국가지원지방도	농
지방도	발과수원
기타도로	삼각점
우차로	수준점
소차로	표고점
교량	농묘지
철도터널	학교
류	교회
지방	점
면·저수지	광산
등고선	울타리
	담

범례	
도시계획구역	자연취락지역
제1종일반주거지역	보전녹지지역
제2종일반주거지역	미관지구
제3종일반주거지역	공원
준주거지역	광장
일반상업지역	완충/경관녹지
근린상업지역	도로 2류 (50M)
유통상업지역	도로 1류 (35M)
일반공업지역	도로 2류 (30M)
준공업지역	도로 3류 (25M)
자연녹지지역	종로 1류 (20M)
생선녹지지역	종로 2류 (15M)
최고도지구	종로 3류 (12M)

선산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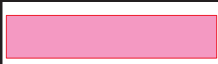
범례	
기 고 시	
미 고 시 (금회 고시대상)	

고 시 구 분 : 미고시
지 역 명 : 선산읍 죽장, 화조,
독동리 일부지역
면 적 : 0.820 km²

범례	
도·광역시·군	시·군청소재지
시·군·구	읍·면·동소재지
읍·면·동	명승고적
고속국도	성터
국도	선
국가지원지방도	발·과수원
지방도	상각점
기타도로	수준점
우마차로	표고점
소로	농·묘지
교량	학교
철도및터널	교철
지류	절
제방	광탄
담·저수지	광탄
동고선	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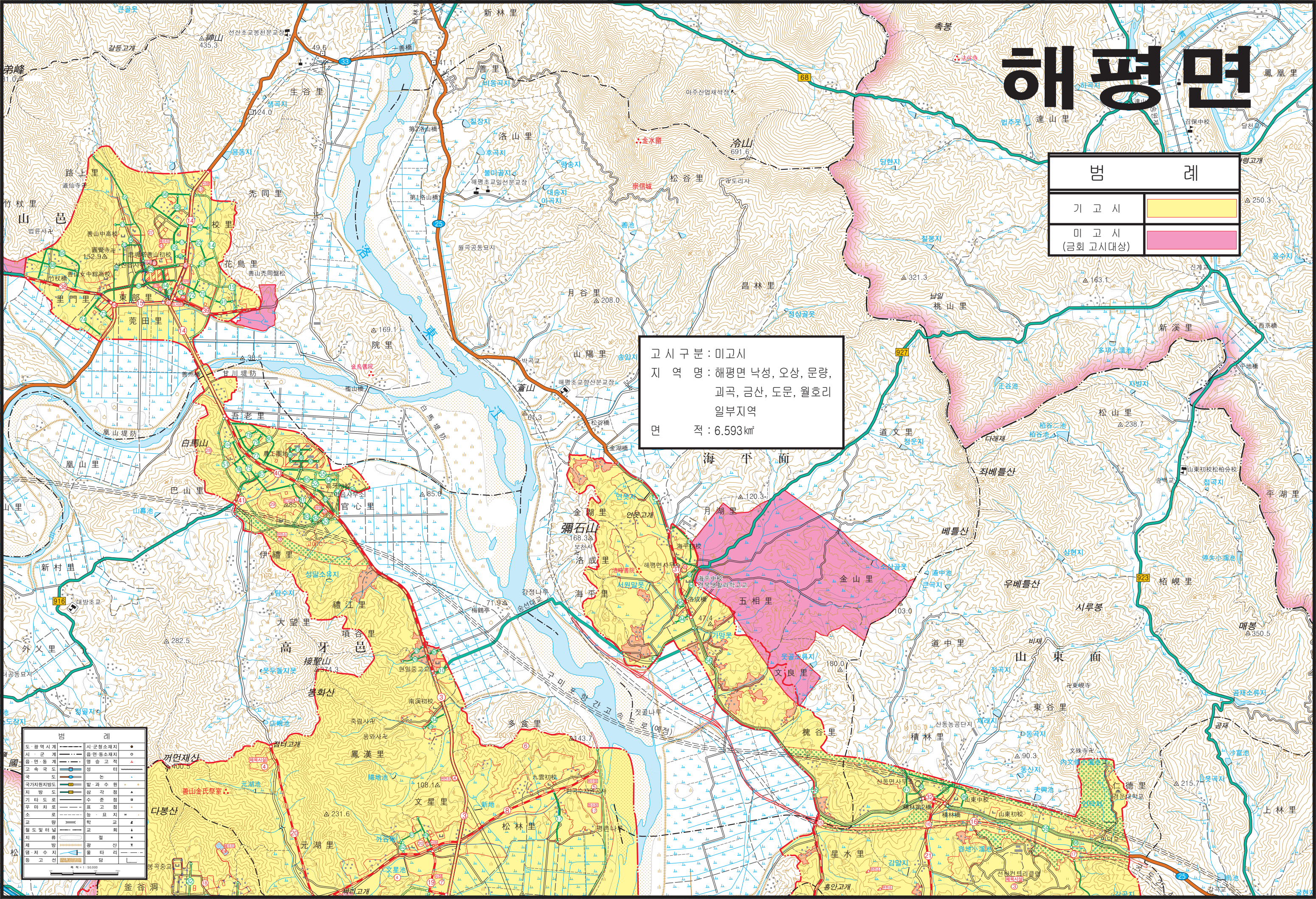
속적 1:50,000

해평면

범례	
기 고 시	
미 고 시 (금회 고시대상)	

고 시 구 분 : 미고시
지 역 명 : 해평면 낙성, 오상, 문량,
괴곡, 금산, 도문, 월호리
일부지역
면 적 : 6.593 km²

범례	
도·광역시·군	시·군청소재지
시·군·읍·면	읍·면청소재지
읍·면·동·리	명승고적
고속국도	성
국도	능
국가지원지방도	발·과수원
지방도	삼각점
기타도로	수준점
우마차로	표고점
소	능요지
교	학교
철도및터널	교회
지류	결
계곡	광산
담·저수지	울타리
동고선	담



범례	
기 고 시	
미 고 시 (금회 고시대상)	

고 시 구 분 : 미고시
지 역 명 : 산동면 동곡, 도중,
적림리 일부지역
면 적 : 3.767 km²

범례	
도·광역시·지·군·구	시·군청소재지
읍·면·동·개	영·민·통·소·지
국·속·국·도	명·승·국·적
국·지·관·지·방·도	성·터
지·방·도	논
기·타·도·로	밭·과·수·원
우·마·차·로	성·각·점
소·로	수·준·점
국·도·량	표·고·점
철·도·및·터·널	농·묘·지
지·류	학·교
계·방·방	교·회
영·지·수·지	절
동·국·선	왕·산
	울·타·리
	담

장천면

범 례	
기 고 시	
미 고 시 (금회 고시대상)	

고 시 구 분 : 미고시
지 역 명 : 장천면 하장, 신장리
일부지역
면 적 : 1.258 km²

범례	
도·광역시·시	—————
시·군·계	— · — · —
읍·면·동·계	— · — · —
국·속·국·도	—————
국·기·원·지·발·도	—————
지·발·도	—————
기·타·도·로	—————
유·마·차·로	—————
소·수·로	—————
국·도·향	—————
철·도·및·터·널	—————
지·류	—————
면·발	—————
점·수·지	—————
등·고·선	—————
시·군·청·소재·지	●
읍·면·동·소재·지	○
국·도·국·적	—————
성	—————
터	—————
논	—————
발·과·수·원	—————
강	—————
작	—————
수·준·점	■
표·고·점	■
농·요·지	■
학·교	■
교·회	■
점	■
관·상	■
울·타·리	—————
담	—————

참 고 법 령

□ 지방세법

제112조 (재산세 도시지역분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"이라 한다)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토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
2.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.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.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,골프장,유원지,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116조 (징수방법등) ①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·징수한다.

□ 지방세법 시행령

제111조 (토지등의 범위)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"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.

1. 토지: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·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(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)
2. 건축물: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
3. 주택: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.

□ 구미시 시세 조례

제14조(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의 고시) ①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구미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이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.

제15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1천분의 1.4로 한다.

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제6조(국토의 용도 구분)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,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,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.

1. 도시지역 :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·정비·관리·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

제32조(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) ①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(이하 "도시·군관리계획결정"이라 한다)이 고시되면 지적(地籍)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·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.